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주소: 우 1246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267-181 3층/전화: 02-3271-0488/fax: 02-3271-0495 /담당자: 김수만

문서번호 : 세가본 제386호(전도-43)	선 결			지 시	
시행일자 : 천일국7년 천력 10월 9일 (양력 2019년 11월 5일)	접 수	일자 시간		결 제 · 공 람	
경 유 :		번호			
수 신 : 전국 지구장, 교구장, 교회장	처 리 과				
참 조 : 지구 총괄국장	담 당 자				

제 목 : 신한국가정연합 신종족메시아 사명완수 기준조정 및 천보등재안내

1.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삼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천지인삼부모님과 실체성신독생녀 참여머님의 은혜로 국가복귀의 천운이 신한국에 도래하는 가운데, 신종족메시아운동이 불길처럼 전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섭리적 기반 위에 신종족메시아가 혼독가정교회를 기반으로 한 교회실세화, 국가복귀를 성취할 수 있는 신종족메시아 사명완수 기준이 섭리적으로 요청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세계본부의 지침에 따라, 천보원등재를 위한 신종족메시아 사명완수 기준 및 등재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가. 신한국가정연합 신종족메시아 사명완수 기준 조정

1) 목 적

- 가) 혼독가정교회 동반안착을 통한 국가(지역)복귀 활동기반 마련
- 나) 신종족메시아 혼독가정교회 활동의 촉진
- 다) 혼독가정교회를 통한 교역 정착 및 실세화 기대 조성

- 2) 조정사항: 43가정 인증을 위하여 적용되었던 3조건(탕감봉, 40성별(정성), 3일행사)을 혼독가정교회 활동참여로 전환적용

3) 사명완수 기준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적 기준	1. 종적 430대 조상축복완료 서약서	1. 남편4줄기(직계, 모계, 부의모계, 모의모계) 2. 아내4줄기(직계, 모계, 부의모계, 모의모계) *총 부부8줄기에 대한 430대 조상축복완료
횡적 기준	1. 신종족메시아 430가정(3대권) 축복완료	좌동
	2. 혼독가정교회활동 실행 서약서	2. 읍면동 혼독가정교회장 임명장
	3. 43가정 실세화 조건 가. 43가정(3대권) 이상 7조건 행정 완료. 나. 43가정(3대권) 이상 정식구로 '신앙레벨 1' 유지 * 세가본 제254호(가정-13) 공문 참조	3. 43가정 실세화 조건: 43가정(3대권) 이상 혼독가정교회 활동참여

※ '신종족메시아 세계기준 횡적사명 완료 확인서'를 받은 기존의 59가정은 430대 조상축복완료 및 읍면동 혼독가정교회 활동내용을 별도로 확인할 예정임.

나. 부부8줄기 430대 조상축복완료 확인

- 1) 430대 조상축복완료 후 HJ천주천보수련원에서 '부부8줄기 430대 조상축복완료 확인서(가칭)' 발급 예정(수련원 홈페이지 또는 접수처)

다. 신종족메시아 430가정(3대권) 축복완료 확인

- 1) 신종족메시아 종족원 430가정(3대권) 축복완료 후 신한국가정연합 가정국에서 '신종족메시아 430가정 축복행정완료 확인서' 발급
- 2) 해외 거주 중인 축복받은 '직계자녀' 또는 '믿음의 자녀'에 대한 축복실적 인정은 '세가본 제254호(가정-13)'의 기준 유지

라. 혼독가정교회장 임명 확인

- 1) 읍면동책임자로 선임한 후 교회에서 혼독가정교회장 임명장 수여 또는 임명 확인서 발급

마. 43가정 실세화 조건 확인

- 1) 혼독가정교회 활동참여 인정기준

조건1) ‘신종족메시아 사명완수 신청서(가칭)’ 협회 접수일 기준 이전에 1회 이상

조건2) 신종족메시아 종족원, 새식구, 지역민 등을 참석대상으로 한 신종족메시아 훈독가정교회 훈독회 활동

(예> 접수일: 2019년 10월1일, 활동보고내용: 2019년 10월1일 이전에 훈독가정교회 훈독회 활동 1회이상이면 접수가능)

2) 훈독가정교회 훈독회 활동

가) 교회 대예배 참여(대그룹)

나) 신종족메시아 훈독가정교회 훈독회 모임(소그룹)

다) 신한국가정연합 교회주관의 원리교육

라) 참가정실천운동본부 혹은 교회별 활동조직(예>문화센터)참여

마) 지역봉사활동

바) 산수원애국회, 생활정치아카데미, 다문화 관련 활동

사) 섭리기관 연대 활동(UPF,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피스로드,

세계평화여성연합, 초종교 활동(IAPD), YSP)

아) 그 외 지역복귀 및 통반격파를 위한 대사회 활동

※ 가)~아) 항목 중 한 가지 이상 활동에 참여할 경우 모두 해당됨.

3) 훈독가정교회 활동참여 실적입력 방법

가) 신종족메시아가 훈독가정교회장으로 임명받은 후, 신종족메시아 훈독가정교회 훈독회 활동보고(하나로)를 통한 믿음의 자녀 출석 입력(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

나) 지역교회(혹은 교역) 대예배 기본출석 입력

4) 훈독가정교회 활동참여 실적확인 방법: 추후 공지

5) 해외 거주 중인 축복받은 ‘직계자녀’ 및 ‘믿음의 자녀’의 실적 인정기준
신종족메시아 세계기준 횡적사명 완료를 위한 43가정 실적 인정은 다음 기준으로 조정적용

구분	변경 전 '세가본 제254호(가정-13)' 참조	변경 후
인정 범위	(1) 43가정 중 20가정까지 인정	좌 동
인정 기준	(1) 7조건 완료(축복완료 + 3조건 완료) (2) '신앙레벨 1'과 동일 기준 (3) 해외 믿음의 자녀 명단 및 소속 교회장 확인서 제출	(1) 축복완료(4조건 완료) (2) 예배 또는 훈가교 활동 (3) 해외 믿음의 자녀 명단 및 소속 교회장 확인서 제출

※ 축복완료(4조건) : 교육, 축복헌금, 성주식, 축도

※ 3조건: 탕감봉, 40일성별(정성), 3일행사

바. 신종족메시아 사명완수가정 접수 안내

1) 접수기간: 2019년 11월 중순 ~ 1월 말 (개발 및 협의 후 공지)

※ 접수 시작시점은 행정시스템 구축 이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2) 대 상: 종적기준 및 횡적기준 완료가정

3) 신청 증빙서류(안)

가) 부부8줄기 조상축복완료 확인서(가칭)

나) 신종족메시아 430가정 축복완료 확인서

다) 읍면동 훈독가정교회장 임명장 또는 훈독가정교회장 임명 확인서

라) 믿음의 자녀 43가정(3대권) 훈독가정교회 활동참여 확인서

※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 및 실적 확인 매뉴얼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4) 신종족메시아 사명완수 행정 담당부서

순	구분	세부내용	담당부서		
			전도교육국	가정국	HJ천주 천보수련원
1	종적 기준	부부8줄기조상축복완료			O
2	횡적 기준	430가정 축복행정완료		O	
3		읍면동 훈가교장 임명장	O		
4		43가정 실세화 조건	O		
5	신종족메시아 사명완수 최종검토 및 명단등록		O		

사. 신종메 완성조건(횡적)은 43가정 실세화 조건과 관계없이 430축복가정 전체가 7단계조건을 완료하는 것이므로, 신종족메시아는 천보원 등재이후 믿음의 종족가정이 7단계를 완료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및 지도바랍니다.

“끝”

신한국가정연합회장 이 기 성

